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

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